

# 윤리강령

본 윤리강령은 SFA 그룹 모든 계열회사(이하 ‘회사’)의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헌장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판단과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령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사는 투명한 시스템과 공정한 문화를 조성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정직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제1장 기본 정신

1. SFA 그룹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며, 정직과 성실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2. 관련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며, 원활한 소통과 신의성실에 기반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다.
3. 모든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유·무형 자산과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으며,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이용·보관·파기하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윤리 기준을 준수한다.
5. 직무수행과 일상생활에 있어 SFA 그룹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6.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유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
7. 개인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배제하는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8.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으며, 건전하고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9. 본 윤리강령을 포함한 윤리경영 관련 사규(이하 '윤리규범')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며,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에 적극 동참한다.

## 제2장 임직원 존중 및 인권 보호

1.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성별, 학력, 출신, 연령, 종교, 장애, 국적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2.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운영하며, 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지원한다.
3.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임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직무수행과 연계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열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한다.

## 제3장 고객만족

1. 고객은 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만족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한다.
2.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3.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왜곡된 판단을 유도하지 않는다.
4.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며, 고객의 요구사항과 불만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5. 고객의 자산과 정보는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4장 주주 이익 보호 및 투명경영

1. 경영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며, 재무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정보도 허위로 작성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2. 주주 및 투자자에게 경영현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공개하고,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하여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 등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는다. 퇴직 후에도 재직 중에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의 비용집행은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건전하게 처리하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지 않는다.
5. 회사의 자산과 사업기회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겸직, 부업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 제5장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

1.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등록 및 갱신 절차를 운영한다.
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며,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협력회사의 기술과 경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협력회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 향응, 편의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통념상 의례적 범위의 경조사, 기념품 등 세부 기준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5.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청렴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

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 제6장 준법경영 및 공정경쟁

1. 직무 및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UN 부패방지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을 준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2.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경쟁사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취득할 때는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제3자의 정보 자산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4.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금품, 향응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5.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회사의 자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6. 해외 사업 수행 시 현지 법령과 문화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협력회사 및 해외 현지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며, 이를 거래 조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7장 사회적 책임

1.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성실한 납세 및 사회공헌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2.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 대한 UN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책임경영을 실천한다.
3. 협력회사의 ESG 경영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협력 네트워크 내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4.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한다.

5. ESG 관련 정보는 허위 또는 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공시하며, 실질이 없는 성과를 부풀리는 그린워싱 또는 사회적 세탁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8장 환경 보전 및 안전보건

1.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정책, 국제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설계, 생산, 폐기 등 직무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한다.
3. 임직원, 지역사회, 협력회사 및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산업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4. 재난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무재해 경영을 실현한다.
5. 안전 관련 법령과 사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위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에 적극 동참한다.
6.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 네트워크 전체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9장 윤리규범 준수 의무

1.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경영진과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의 윤리규범 준수를 지도·감독·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윤리경영 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 행위를 강압 받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조직 또는 내부 신고채널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는 선의의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원보호, 보복금지 등 엄중한 보호제도를 운영한다. 신고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의에 근거한 신고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호한다.

5. 회사는 윤리규범 실천에 모범을 보이거나 자율준수 문화 조성에 공헌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적극 포상하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회사는 협력회사가 본 윤리규범의 정신을 존중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실천 체계를 갖추어 선순환적인 윤리경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7. 본 강령의 해석 및 개정 권한은 SFA 그룹 직제에 따른 감사조직에 있으며, 해당 조직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맞게 윤리규범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